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 의무자	① 법 인 명 (상 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거주자		[] 비거주자					

[illegible]

이
한
도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⑩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⑪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⑫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에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 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 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국·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또는)	231
단 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법인식별기호	
	외국단체		단체명	고유번호	31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 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빈칸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⑯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⑮ 과세구분														
비과세, 면제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 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sim45\%$)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기타 세율	일반 세율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 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 징수대상 외의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 § 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 § 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 § 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 § 17①3, 법인세법 § 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 § 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5)	15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 § 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 § 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 § 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 § 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19 2호, 법인세법 § 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 § 16①9)	19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 17①8)	5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 § 164①8)	20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1, ELS)	6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 § 16①10)	21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2, DLS)	6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1)	22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②)	62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④)	23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7①9)	6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 § 114의2②)	24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7①10)	64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6①12)	25	상장지주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3, ETN)	65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3)	26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의3)	66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삼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 § 93 1호)	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의4)	67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벤처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 § 14④)	PA
		벤처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 § 14④)	P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 § 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 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 § 87)	SC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 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 § 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 § 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 § 87의2)	SE	외국환업무위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 § 21①2)	PF
선박투자자 배당(조특법 § 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 § 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 § 87의6)	SG	비거주자들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 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 § 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 § 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 § 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 § 66②, 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 § 88의4⑩)	SJ	영여조합법인 배당(조특법 § 67②, 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 § 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 § 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 § 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 § 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재외동포전문 투자신탁(조특법 § 91의12)	SU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 § 12 1)	PN
재형저축(조특법 § 91의14)	SW	법령일~상환예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 § 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 국가채권 중 "국"은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함.	PO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 § 91의15)	SX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 § 129②1)	P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 91의18)	SZ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 § 129②2분문)	P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 § 87)	T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 § 129②2 단서)	PR
정병내일준비저축(조특법 § 91의19)	TB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 129④)	PS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조특법 § 87의7)	TC	외국법인의 국제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 93의2)	PV
청년희망저축(조특법 § 91의21)	TD	해외채권으로 "P0"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청년도약계좌(조특법 § 91의22)	TE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개인투자용 국제(조특법 § 91의23)	TF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Y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26의2)	QA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27)	QB
		기타	ZZ

작성방법

20. ㉑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㉒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증권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㉓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 95.12.31. 이전 또는 ' 01.7.1. ~ ' 05.6.30. 사이 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 05.7.1. 이후 최초로 지급 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㉔ 지급대상기간란: 이자·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㉕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㉔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㉖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㉗ 소득세·㉘ 법인세·㉙ 지방소득세 및 ㉚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 간 총 지급건수		⑥ 연 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 외국인 (1 · 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세	⑳ 지 방 소득세	㉑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연간 소득원원란: ⑫ 소득자 성명(상호)란에 적힌 소득자의 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 ⑯ 지급건수란에 적힌 건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접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로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5.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6. ⑯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로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로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율	⑲ 소득세	⑳ 지방소득세	㉑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거주지국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코 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압정구 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득 귀속		⑮ 지 급 총 액		⑯ 세 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 득 세	⑱ 지방소득세	⑲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⑪ 업종구분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로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점검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⑭ 내·외국인란: 내국인인 경우는 “1”로, 외국인인 경우는 “9”로 적습니다.
 5. ⑯ 세율란: “3%”로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로, 봉사로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로 수입금액은 “5%”로 적습니다.

소득자	⑦ 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소득 금액	사 업 별	⑱ 수입금액(⑰)	⑲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계	
	보 험 모 집							
	방 문 판 매							
	음 료 배 달							
	(124) 합 계							

공제	㉘ 부녀자	40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㉙ 한부모가족		출산·입양자 (명)	
30 연금보험료공제		41 연금계좌 세액공제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1 종합소득공제 계		42 기부금 세액공제	정차자금기부금	
32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3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특례기부금	
34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43 표준세액공제	일반기부금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3.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통화폐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㉞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득 부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인)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금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 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 촌특별세	⑬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 세소득	㉒ 필요경 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㉕부터 ㉘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㉑(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 ㉑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㉓ 소득금액란은 ㉑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 방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는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임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쇄(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 련 번 호	⑭ 소득 구분코 드	⑮ 소득자 성명(상 호)	⑯ 주민(사 업자) 등록번 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 액	㉑ 비과 세소득	㉒ 필요경 비	㉓ 소득금 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주소)			

[illegible]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㉞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대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공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61], [63], [65], [78] 제외), [6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4]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65] 직무발명보상금, [71] 상금 및 부상 [72] 광업권 등 [73] 지역권등 [74] 주택임주지체상금
 [75] 원고료등 [76] 강연료등 [77] 종교인소득 [78] 사례금 [79] 자문료등 [80] 통신판매 대여소득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 [68], [69], [71] ~ [77], [79], [80] 제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❶ 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 습니다.	❷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❸ 소 재 지 (주 소)	❹ 연 간 소득 인원	❺ 연 간 총지급 건수	❻ 연 간 지급총액 계	❽ 세 액 집 계 현 황			
						❹ 연 간 소득금액 계	❾ 소득세	❿ 지방 소득세	⓫ 계
							⓪ 법 인 세	⓫ 농 어 촌 특별세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⑰ 주 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⑱ 내· 외 국 인	⑲ 지 급 년 도	⑲ 지 급 일	⑲ 지 급 총 액	⑲ 필 요 경 비	⑲ 세 율	⑲ 소 득 세	⑲ 지 방 소 득 세	⑲ 계
		⑲ 소 득 자 성 명 (상 호)	⑲ 소 득 자 의 주 소										
1													
2													
3													
4													
5													
6													
7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②, ⑯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 기 재 번 호 |
|------------------------------------|--|
| (1) 원 칙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
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
호를 적습니다. |
|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
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4.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
터 적용합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 외)	기타소득(가상자산)
구분코드	40	41	42	61	62	63

5. 가상자산소득(소득구분코드 63)의 경우 4쪽의 가상자산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⑮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7. ㉔ 소득금액란은 ㉔ 지급총액에서 ㉓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정합니다)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귀속
연도

년

관리
번호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⑲ 내· 외국인	⑳ 지급 년도	㉑ 지급일	㉒ 지급 총액	㉓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㉔ 소득 금액	㉕ 세율	㉖ 소득세	㉘ 지방 소득세	㉚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⑰ 등록번호 (인식번호)							㉗ 법인세	㉙ 농어촌특 별세	
		⑮ 소득자의 주소	⑱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
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
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⑥ 성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

⑨ 소득구분코드

⑩ 지급

⑪ 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천징수세액

⑯ 소득세

⑰ 법인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⑳ 계

연월일연월

㉑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㉒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선박 등 임대·인적용역·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④·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기재번호
(1)	원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4. ⑨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가상자산의 구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 구분코드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 외	기타소득-가상자산
	40	41	42	61	62	63

5. ⑯란부터 ⑲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6. ㉒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가상자산소득 명세서

①자료관리번호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성명)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주소)				⑤제출대상 연도									
⑥ 일련 번호	⑦ 양도 등 일자	⑧ 소득 귀속 연월	⑨ 거래 유형	⑩ 소득자 구분 코드	⑪성 명 (법인명)	⑬주 소 (소재지)		⑯ 종목명	⑰ 단가	⑱ 양도 등 수량	⑲ 수입금액 (단위: 원)	⑳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 (단위: 원)	㉑ 소득금액 (단위: 원)	㉒ 세율	㉓원천징수세액(단위: 원)			㉗ 실명 구분	㉘ 비고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거주지국	⑮ 거주지국 코드								㉔ 소득세	㉕ 법인세	㉖ 지방 소득세		
1																			
2																			
3																			
4																			
5																			
6																			
7																			
8																			
9																			
10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작성해야 하며, 양도·대여·인출일자순으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①자료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 ②법인명(상호,성명)란: 법인은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 ④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 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제출대상 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예: 2023년 중에 지급한 경우이면 2023으로 적습니다).
- ⑥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⑦양도 등 일자란: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 ⑧소득귀속연월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 2023년 1월이면 202301로 적습니다)
- ⑨거래유형란: 양도거래인 경우 "양도", 대여거래인 경우 "대여", 인출거래인 경우 "인출"을 각각 적습니다.
- ⑩소득자 구분코드란: 가상자산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실지명의 구분			명의	번호	코드
개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또는) 법인식별기호	353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성명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 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 ⑪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은 후 ()안에 그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의 성명은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 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 ⑫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③란의 작성방법과 같이 적습니다.
- ⑬주소(소재지)란: 주소(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⑭거주지국란 및 ⑮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 ⑯종목명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종목명(상품명)을 적습니다.
- ⑰단가란: 거래대상 가상자산 1개의 양도·대여·인출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인출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가액을 적습니다.
- ⑱양도 등 수량란: 거래대상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수량을 적습니다.
- ⑲수입금액란: 해당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를 적습니다.
- ⑳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대여·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 ㉑소득금액란: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㉒세율란: 원천징수세율(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 ㉓원천징수세액란: 지급금액의 10%(지방소득세 불포함) 또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를 불포함)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㉔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 ㉕법인세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 ㉖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을 적습니다.
- ㉗실명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관리번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① 귀속 연도	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 소득
	주(현)			~		
	종(전)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 (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 (⑯-⑰)
-------	-------------	--------	--------------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인	㉑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㉒ 결정세액		
		㉓ 배우자	㉔ 종합소득과세 표준	가납부세액	㉕ 종(전) 근무지	
		㉕ 부양가족 (명)	㉖ 산출세액		㉗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㉘ 경로우대 (명)	㉙ 혼인세액공제	㉚ 차감 납부할 세액		
		㉛ 장애인 (명)	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명)			
			출산·입양자(명)			
		㉝ 부녀자	㉞ 연금계좌세액공제			
		㉟ 한부모가족	㊱ 정치자금기부금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㊲ 연금보험료공제	㊳ 기부금세액공제	㊴ 고향사랑기부금			
	㊵ 종합소득공제 계		특례기부금			
	㊶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㊷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㊸ 표준세액공제	일반기부금			
	㊹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㊺ 외국납부세액공제				

㊻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 거주지국란 및 거주지국코드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청홈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란: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⑭ 지급액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⑮ 비과세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㉑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㉚ 차감 납부할 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소득 부정수)에는 "0"으로 적습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illegible]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illegible]

④ 기부금 조정 명세

[illegible]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 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란: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으며,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란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란의 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④ 기부금 조정 명세란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란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⑮ 기부금액란,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란, ⑱ 공제대상금액란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